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○ 대　　상 : Pure Storage X10, Pure Storage X20, Cisco SAN Switch
○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○ 제조사 · 공급사 : ㈜씨앤이정보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 18,049,000 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**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**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 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씨앤이정보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❍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
❍ 대　　상 : 공간정보통합플랫폼

- 행정서비스(기본도, 도로·상수·하수관리, 시설물편집, 점용허가관리, 업무지원 등)
- 대민서비스[용인시 공간정보 포털(https://gis.yongin.go.kr)]

❍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
❍ 제조사 · 공급사 : ㈜브이앤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55,225,8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브이앤지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❍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❍ 대　　상 :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
❍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❍ 제조사 · 공급사 : ㈜브이앤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4,500,0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브이앤지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○ 대　　상 :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
○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○ 제조사 · 공급사 : ㈜브이앤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6,592,0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브이앤지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❍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❍ 대　　상 : 공간정보 투자유치시스템
❍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❍ 제조사 · 공급사 : ㈜브이앤지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2,075,0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브이앤지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○ 대　　상 :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GIS 엔진(MapPrime)
○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○ 제조사 · 공급사 : ㈜올포랜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.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9,240,0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올포랜드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○ 대　　상 : Cubeone 1식
○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○ 제조사 · 공급사 : ㈜이글로벌시스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.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.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.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2,085,6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이글로벌시스템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❍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❍ 대　　상 : OZ Xstudio 5.0
❍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❍ 제조사 · 공급사 : ㈜포시에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2,200,0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
(※ **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**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㈜포시에스　(인)

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협약서

❍ 사 업 명 : 2027년 용인시 공간정보체계 통합 유지관리
❍ 대　　상 : GeoDT 3.0
❍ 발주기관 : 용인시청 (토지정보과)
❍ 제조사 · 공급사 : 공간정보기술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년 용인시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통합 유지관리)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·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제조사 ·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과업내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 · 공급사의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·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(₩338,300원(부가세포함))으로 한다.
(※ 2027. 1. 1.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일(착수일)부터 일할 계산함)

제4조(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·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·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 · 공급사는 물품공급 ·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6 년　9월　　일

"발주기관"　　용 인 시 장　(인)

"제조사 · 공급사"　　공간정보기술 ㈜(인)